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인정유효기간 만료까지 연장 된다
- 계약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변경계약서 작성에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감경 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최소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당 시간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30분	16,940원	2,541원	17,450원	2,618원
60분	24,580원	3,687원	25,320원	3,798원
90분	33,120원	4,968원	34,120원	5,118원
120분	42,160원	6,324원	43,430원	6,515원
150분	49,160원	7,374원	50,640원	7,596원
180분	55,350원	8,303원	57,020원	8,553원
210분	61,670원	9,251원	63,530원	9,530원
240분	68,030원	10,205원	70,080원	10,512원
종일방문요양	95,960원	14,394원	98,860원	14,829원

방문목욕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60분미만(차량이용 차량내)	69,180원	10,377원	71,190원	10,679원
60분미만(차량이용 가정내)	62,380원	9,357원	64,180원	9,627원
60분미만(가정내)	38,950원	5,843원	40,080원	6,012원
60분이상(차량이용 차량내)	86,480원	12,972원	88,990원	13,349원
60분이상(차량이용 가정내)	77,970원	11,696원	80,230원	12,035원
60분이상(가정내)	48,690원	7,304원	50,100원	7,515원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 경감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 경감대상자

-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 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①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 ※ 변경계약은 수급자(보호자)와의 직접 계약에 의해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변경내역을 보호자가 원하는 방법 (예: 우편, 문자 및 sns,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 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 (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과 종류)

① 서비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내용 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아래(서비스내용 표)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② 서비스 내용 및 종류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